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2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가. 위치도
 - 나. 시설배치도
 -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 3. 교육과정 편성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
-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학습비 등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영 제12조의3에 따라 등록된 시설·설비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 가. 시설·설비 현황표
 - 나. 시설배치도
- 6. 개설예정일: 개설예정일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7.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변경에 따라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운영규칙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제2조의5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시행규칙 제2조의2”를 “시행규칙 제2조의5”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및 별지 제1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8서식 및 별지 제1호의9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6서식 및 별지 제1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9서식(중전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최종학력	학교명	
		기간 입학 . . . ~ 졸업 . . .	학위등록번호
신청 내용	자격등급 및 요건	평생교육사 급 제 호	

「평생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17

 1. 2019년 12월 31일 기준
 2. 2019년 12월 31일 기준
 3. 2019년 12월 31일 기준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4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 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 위치도 나. 시설배치도 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 교육과정 편성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 4.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학습비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12조의3에 따라 등록된 시설 · 설비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시설·설비 현황표 나. 시설배치도 6. 개설예정일: 개설예정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행	개정안
	7.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변경에 따라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운영규칙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제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 관련 과목)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평생교육 관련 과목) ① ----- 별표 1의3 -----.
②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 별표 1의3 -----.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구분 (※ 명칭, 위치, 교육과정 편성내역, 경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 설치 내역, 개설예정일, 운영규칙 중 해당사항 기재)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평생교육법」 제3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변경사항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명칭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대장 등본
위치	1. 위치도 1부 2. 시설배치도 1부(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표 1부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학습비 등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설·설비	1. 시설·설비 현황표 1부 2. 시설배치도 1부	
개설예정일	개설예정일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운영규칙	운영규칙 1부	

처리절차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제	→	등록증, 지정서, 작성	→	대장 기재	→	교 부
신청인		시·도교육청 (담당부서)		시·도교육청 (담당부서)		시·도교육청 (담당부서)		시·도교육청 (담당부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서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

등록· 신고번호 (등록일자)	변경 일자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전화 번호	폐쇄 일자	폐쇄 사유	비고 (확인)
		명칭	위치	교육 과정 편성 내역	경비(학습비 관련 사항 포함) 관련 사항과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 설비 설치 내역	개설 예정일	운영 규칙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						
									()						
									()						
									()						
									()						
									()						
									()						
									()						
									()						